

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·②(생략)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④(생략)</p>	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1조(환매수수료) <신설>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41조(환매수수료) 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 <삭제> <삭제> <삭제></p>
<p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~④(생략) ⑤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<p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~④(현행과 같음) <삭제></p>
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③(생략)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⑤(생략)</p>	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③(현행과 같음) <삭제> ④(호변 변경)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p>